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38
----------	-------

발의연월일 : 2014. 4. 28.

발 의 자 : 이명수 · 김한표 · 김태원
김을동 · 문정림 · 정희수
이완구 · 이현승 · 이노근
안효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설비 등을 의미하며, 냉방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냉방설비의 경우 현행법의 하위법령에서 건축설비에 포함되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상에 위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공기정화설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환기설비와 더불어 별도의 설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의 범위에 냉방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환기·난방”을 “환기 또는 공기정화·난방·냉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 <u>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u>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 ----- ----- ----- ----- <u>환기</u> 또는 <u>공기정화·난방·냉방</u> ----- ----- ----- ----- -----.
5. ~ 19. (생략)	5. ~ 1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